

# 한·EU FTA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특징

A Stud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Features of Korea·EU FTA

김창모(Chang-Mo Kim)

경기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        | 참고문헌     |
| III. EU의 지적재산권 보호 개관       | ABSTRACT |
| IV. 한·EU FTA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특징 |          |

## 국문초록

한국과 EU는 2007년 5월에 FTA 협상을 시작하여 2011년 7월 1일 자로 한·EU FTA가 잠정 발효 되었다. EU는 2007년 1월에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추가 가입으로 27개 국으로 확대 개편되어 세계최대의 선진화된 단일 경제권으로 등장하였으며, 한국에게는 중국에 이어 제2위의 교역파트너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상대국들이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랜 역사적 전통에 따른 문화적, 학문적 자산과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온 경제적, 산업적 기반을 가진 EU는 여러 가지 부문 중에서 지적재산은 단순한 보유자산의 의미를 넘어 보다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통해 구체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EU FTA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등이다. 전체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제외하면 한국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EU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협정에 나타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지적재산권, 보호, 특징, 한·EU FTA

## I. 서 론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상대국들이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WTO 체제의 출범이후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EU는 2007년 1월에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추가 가입으로 27개국으로 확대 개편되어 세계최대의 선진화된 단일 경제권으로 등장하였다. 현재 터키, 크로아티아 등이 EU 가입협상을 시작하여 향후 EU의 통합과정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는 미국과 일본을 밀어내고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교역파트너로 떠올랐으며, 교역규모가 매년 성장해 나가고 있다.

한국과 EU는 2007년 5월에 FTA협상을 시작하여 2011년 7월 1일 자로 한·EU FTA가 잠정 발효 되었다. 총 15개 챕터와 부속서로 이루어진 협정에는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무역 구제, 기술장벽, 위생, 서비스무역,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투명성 등 양측의 관심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EU는 오랜 역사적 전통에 따른 문화적, 학문적 자산과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온 다양하고 강력한 경제적, 산업적 기반 및 그와 관련된 많은 지식재산을 축적해 오고 있다. 여러 가지 부문 중에서 지적재산은 단순한 보유자산의 의미를 넘어 보다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통해 구체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노력도 강해지고 있는데, EU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기술관련 교역의 중심역할을 하는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를 지지하여 역외 국가들이 WTO TRIPs<sup>1)</sup>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적재산권 관련기준에 부합되도록 강력한 룰을 집행하고 있다. 또한 EU는 확대 이전 역외 국가에 대해 부과하고 있던 지적재산권 관련 규제조치를 EU 확대와 함께 신규 가입국에도 자동 확대 적용하고 있다.

향후 지적재산권 부문에 있어서 EU는 한국과 경쟁을 해나가고 경쟁의 강도도 점차 높여갈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EU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

1)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히 부문을 요약한 뒤, 한·EU FTA에 나타난 지적재산권 보호와 특징에 대해 협정서를 중심으로 분석, 종합해보고자 한다.

## II.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

### 1. 근대적 논의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논의는 초기에 있어서 주로 법철학적 연구로부터 비롯한다. 앵글로 색슨계의 로크주의적 노동 가치설이나 대륙계의 헤겔주의적 인성이론이 인간의 지적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합리화하는 철학적 기초였다. 로크주의적 노동가치설에 따르면 인간의 지적 창작물은 노동의 산물이고 따라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창작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헤겔주의적 인성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지적 창작물은 창작자의 인성 혹은 자아의 자기실현이므로 창작자의 소유권은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sup>2)</sup>

이와 같은 초기의 논의는 사회적 관점을 도외시한 자연법적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해서 대체되었다. 즉, 인간의 지적창작물이 사회적으로 유용하다면 인간의 창작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사회계약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sup>3)</sup>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 중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특허제도를 살펴보도록 하자. 특허제도는 지적 창작물의 보호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적 창작물이 지속적으로 창작 될 수 있도록 하는 발명가와 사회 사이의 하나의 사회계약으로 인식되어 왔다. 19세기 중엽 독점을 반대하는 반 특허운동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한때 특허제도는 위기를 맞았으나 19세기 말 공리주의적 견해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합리화하는 철학적 기초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게 되었으며, 이에 서구의 국가들은 대부분 특허법을 제도화하기에 이르렀다.<sup>4)</sup>

### 2. 최근의 논의

최근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경제적 후생에 초점을 맞추

2) Benko, Robert P.,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sues and Controversies*,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2001, p.46.

3) *ibid*, p.51.

4) Chisum, D.S., Jacobs, A.,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IB, 1998, p.15.

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통하여 지적생산물이 상업적 시장가치를 지니게 되면 지적재산권의 소유자는 독점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은 독점을 야기 시키는 요인이 되고 독점가격의 형성은 곧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점의 폐단에도 불구하고 독점을 경제적 후생의 관점에서 정당화하는 지적재산권의 존재 근거는 흔히 동태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5)</sup>

장시간의 많은 노력과 위험이 따르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의 결과로서의 지적재산물이 만약 독점을 야기 시킨다는 이유로 배타적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공공재적 특성을 지닌 지적재산물의 창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상품적 시장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기술 개발 투자는 지적재산권의 물리적 보호가 불완전하다는 이유에서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한다. 즉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장기적, 동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필요하다.<sup>6)</sup>

J.A. Schumpeter는 이러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제도적 산물로서 독점을 정당화하였다. 그는 특히 기술혁신과 시장구조와의 관계, 기술혁신이라는 창조적 파괴행위가 지니는 역동성, 그리고 기술혁신에 있어서 기업가정신, 불확실성의 역할 등을 강조하였다.

W.D. Nordhaus는 기존의 특허제도와 관련된 경제적 의미를 정책논의의 단계로 발전시켰다. 즉, 발명기술에 대한 얼마만큼의 보호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가라는 특허의 최적수명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특허기간은 발명가에게는 하나의 매개변수에 불과하지만 각국의 정부입장에서는 특허기간을 임으로 선택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유용한 정책변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7)</sup>

EU는 특히 이외에도 한·EU FTA 지적재산권 보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등에도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광의의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강력한 보호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5) Beath, John, Innov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Uruguay Round, EU, 2003, pp.121-122.

6) Chisum, D.S., op.cit., p.19.

7) Nordhaus, W.D., Invention, Growth and Welfare: A Theoretical Treatment of Technical Change, Cambridge, MA: MIT Press., 2003.

### III. EU의 지적재산권 보호 개관

EU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회원국 정부, 집행위원회<sup>8)</sup> 및 지적재산권 제도를 위해 특별하게 설치되어있는 유럽특허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집행위원회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련된 정책수립과 규정의 설치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대표들 간의 논의 및 합의과정을 거쳐 채택된 정책 및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어서,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또는 규정은 EU 회원국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sup>9)</sup>

회원국 정부와 집행위원회는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를 지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EU 외부 국가들이 WTO TRIPs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적재산권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EU의 지적재산권이 EU 이외의 지역에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그 차이에 따라 단일 시장으로서 EU의 저작권 보호는 문화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까지 함께 고려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의 통일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제도의 통일화가 쉬운 분야부터 다루어졌다.<sup>10)</sup>

수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쳐 EU는 정보사회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통일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권리 또는 대상별 보호에는 저작권 및 관련권리지침<sup>11)</sup>,

8) 집행위원회는 지적재산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 역할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여러 총국 중 아래의 총국(Directorate General) 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역내시장총국(DG Internal Market): EU 회원국의 지적재산권제도 통일화에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설치.
- 기업 및 산업총국(DG Enterprise and Industry): 기업의 지적재산권활동 지원. 특히 IPR Helpdesk를 운영하면서 기업의 지적재산권 획득 및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제공.
- 연구개발총국(DG Research):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의 이용 및 보호에 관련된 역할.
- 무역총국(DG External Trade): EU 이외의 지역에서 EU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 및 관련업무 담당.
- 농업총국(DG Agriculture): EU 역내 및 여타 국가들에서 EU의 지리적표지(GI)보호를 위한 역할 담당.
- 정보사회총국(DG Information Society and media): 정보화 사회의 촉진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보호, 지적재산권의 이용 관련 정책 담당.

9) 외교통상부, EU 정책 브리핑, pp.469-470., 2010

10) 상계서, p.487.

11)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2001/29/EC on the harmoniz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저작권 및 관련권리의 보호기간 통일화지침<sup>12)</sup>, 저작자에 대한 재판매권 보호지침<sup>13)</sup>,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지침<sup>14)</sup>, 데이터베이스 보호지침<sup>15)</sup>, 대여 및 대출권지침<sup>16)</sup> 등이 채택되었다. 이 새로운 지침은 집행위원회와 의회 및 각료이사회에서 3년여의 토론과 작업을 거쳐 이루어졌다. 동 지침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통과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새로운 멀티미디어 상품과 서비스분야에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며<sup>17)</sup> 이를 통하여 복제, 배포, 공중전달권 및 복제방지장치의 법적 보호를 통일하는 것이다.

일정한 조건하 에서는 네트워크 운영자를 위한 인터넷상의 기술적 복제에 대한 의무적인 예외, 즉, 사적 복제(회원국의 선택사항)에 대한 열거적인 목록화, 권리소유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개념의 통일, 복제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사용자를 위한 예외규정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 2. 상표

공동체상표의장청(OHIM)에서의 상표등록은 1996년에 시작되었다. OHIM은 EU 전체회원국에서 유효한 공동체상표를 등록한다. 한편, 신규 회원국의 EU가입일 이전에 출원된 공동체상표 권리자의 법적 지위는 이미 등록되었는지 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가입국들까지 그 효력이 확대된다. 따라서 가입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는 심사나 취소청구가 이루어진 날과 관계없이 가입국의 언어로 성질표시 또는 보통명칭이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절대적 등록 거절사유만으로는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 후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동체상표가 가입국의 언어로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침해로 피소된 자는 상표권의 효력을 규정한 공동체상표규정을 원용하여 그 표지가 상표로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고, 공동체상표가 가입국에서 수요자를 기반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가입국에서 공동체상표보다 선의로 먼저 출원되었거나, 우선권 주장일을 갖는 가입국내의 선 권리자는 공동체상표의 사용을 당해 영토 내에서 금지시킬 권한을 갖는다.<sup>18)</sup>

12) Council Directive 93/98/EEC of 29 October 1993 harmonizing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13) Council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resale rights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14) Council Directive 91/250/EEC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mes.

15) Council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16) Council Directive 92/100/EEC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17) 홍성화, 정영진, WTO체제하에서 EU의 저작재산권보호, 2000, p.32.

18) 상계서, pp.16-17.

상표와 관련하여서는 EU의 마드리드의정서가입과 지리적 표시의 보호규정의 개정 등이 진행되었다.<sup>19)</sup> WIPO는 상표소유자가 표준출원으로 회원국들에서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제 상표등록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포도주 및 종류주에 관한 규정 및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EU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sup>20)</sup>는 TRIPs 협정의 요건과는 차이가 있다. 동 규정은 내국인 대우 및 최혜국 원칙인 타 WTO회원국에게 이용 가능한 내용이 아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농산물 및 식품규정에 대해 EU와 공식적인 WTO협의를 제기한 적이 있고, 양자협상이 2000년, 2001년 그리고 2002년에도 계속되었다. 집행위원회는 동 규정들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농산물 및 식품규정에 대한 몇 개의 수정내용은 미국이 표명한 WTO관련 우려사항을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그러한 우려사항들이 모두 감안된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새로운 우려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sup>21)</sup>

### 3. 지리적 표시

EU에서는 지리적표시<sup>22)</sup>가 매우 중요한 지적재산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노력은 역내시장에서 지리적표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함과 함께 EU 이외의 지역에서 유럽의 지리적표시를 보호받기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3)</sup>

EU는 TRIPs를 통하여 지리적 표시를 강화하려고 하였으나, EU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호 할 만한 지리적 표시가 적은 미국 등의 반대에 의해서 다자간 체결이 담보상태에 이르자 EU는 지리적 표시 보호를 각국과 FTA를 통한 양자간 협정<sup>24)</sup>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sup>25)</sup>

19) 외교통상부, TRIPs 지리적 표시 특별보호 대상 확대논의: 지리적표시 보호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2002, p.24.

20) 등록된 상표와 지리적표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먼저 상표는 권리의 소유권자가 존재하나 지리적 표시의 경우에는 권리가 지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어서 소유권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보호기간의 측면에서 보면 상표의 경우에도 오랜기간 동안 존속할 수 있으나 일정한 기간마다 갱신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 반면, EU에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는 한번 등록되면 기간제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1) 상계서, p.27.

22) EU에서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위한 골격규정은 2006년 3월에 채택된 농산물과 식품의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지정에 관한 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 510/2006 of 20 March 2006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signation of origin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stuffs)이다.

23) 외교통상부, 전계서, p.495.

24) EU는 1994년 호주와의 협정에서 EU 명칭 호주내 폐지를, 2003년 캐나다와 포도주 및 종류주 협정에서 EU표시의 캐나다내 폐지를, 2006년 포도주 협정 체결로 16개 지리적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EU·멕시코간 FTA에서 종류주의 원산지 명칭 상호 인정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등으로 250개 유럽산 종류주 등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멕시코내에서 보호하도록 하였다.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권리는 여타 물품의 소유권과는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즉, 지리적 표시는 단체 또는 개인을 중심으로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 지역과의 연관성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여된 공공적 권리로 이해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리적 표시의 권리자는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라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권리자가 특정지역을 벗어나면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그 지역으로 이동해 올 경우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보호대상으로 등록되어있는 지리적 표시는 권리양도의 대상이 아니며, 권리의 보호 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지리적 표시는 공공적 권리이므로 권리침해 즉, 무단사용 등에 대한 보상규정이나 절차가 없으며 그에 대한 제재 조치만 규정되어있고,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명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거나 안내하는 집행위원회나 회원국의 제도는 없으며 명성 유지를 위한 활동은 전적으로 해당 사용단체의 역할로 보고 있다.<sup>26)</sup>

#### 4. 디자인

EU는 2001년 12월에 디자인 보호를 위한 단일의 공동체체계를 도입하는 규정을 채택하였다.<sup>27)</sup> 디자인의 경우에도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될 수 있는 권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체디자인제도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EU의 공동체 디자인제도의 설치는 1998년 9월에 채택한 디자인지침에 의해 회원국들의 디자인제도를 통일화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진 후 공동체 전역에서 유효한 단일의 디자인제도가 채택되었다. 이 규정은 각 EU회원국에 대해 직접 적용되는 두 가지 형태의 디자인, 즉 등록공동체디자인 및 미등록공동체디자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등록공동체디자인 체계 하에서는 스페인 알리칸테에 있는 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에 디자인을 등록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sup>28)</sup>

EU 확대에 따른 공동체디자인의 효력도 확대 되고 있다. 신규회원국의 EU가입일 이전에 출원된 공동체의장의 권리자의 법적 지위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가입국의 영토에까지 그 효력이 확대된다. 다만, 가입국에서 공동체의장보다 먼저 출원되었거나, 우선권 주장일을 갖는 가입국 내의 선 권리자는 그 권리가 선의로 취득된 경우 공동체의장의 사용을 당해 영토 내에서 금지시킬 권한을 가진다.<sup>29)</sup>

25) 윤여강, 정태호, 한국·EU FTA 타결에 따른 한국 지리적표시 보호에 대한 평가, 국제통상연구 제15권 제1호, 2010, p.8.

26) 외교통상부, 전계서, pp. 478-498.

27)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

28) 민윤기, EU의 무역장벽, 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p.23.

29) 상계서, p.26.

## 5. 특허

EU와 회원국에서의 특허출원 및 관리비용은 타 국가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출원, 등록 및 보호기간 중의 관리비용은 미국에 비교해도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 8월 EU 집행위원회는 공동체특허에 관한 규정안을 제안하였다. 동 제안은 EU에서의 특허와 관련된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한 것이다.<sup>30)</sup>

EU의 특허보호는 두 개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개별 회사들은 국가 특허나 유럽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유럽특허의 출원은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에 한다. 유럽특허기구는 뮌헨조약(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전통적인 국제법 형식이다. EPC의 회원국은 27개국인 EU회원국보다 범위가 넓은데,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와 터키도 회원국이다. 유럽특허가 부여되면 여러 개의 EPC 회원국을 지정할 수 있다. 그 특허는 이의신청이 특허부여 후 9개월 이내에 제기되면 그 특허를 중앙에서 수정 또는 취소하는 효과를 가지기는 하지만, 개별 국가별로 효력을 가지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특허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sup>31)</sup>

공동체특허규정안의 목적은 기존의 국가특허나 유럽특허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일의 산업체재산권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EU 전체 영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EU전체에 걸쳐서만 부여되고, 이전되며, 무효가 되거나, 포기될 수 있는 것이다. 동 규정안은 EPO에 대해 출원되고 EPC의 실질적인 규칙에 따른다는 점에서 유럽특허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다. 동 규정안은 부여된 공동체특허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집행위원회가 최초 제안한 주요 내용은 출원료, 번역료, 재판제도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sup>32)</sup>

출원료는 유럽특허의 소요비용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3배 내지 5배가 비싸서 발명가들이 특허를 출원하는데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규정안은 특허출원의 심사와 관련하여 EPO가 부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고 일단 특허가 부여된 후의 연차료를 낮추도록 제안하고 있다.

번역료의 경우, 특허를 모든 EU회원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요건을 없애도록 제안하고 있다. EPO 공식 언어 중의 하나로 특허가 부여되어 그 언어로 공고되고, 청구 항을 두 개의 다른 공식 언어로 번역하면, 더 이상의 번역이 필요 없이 유효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제도는 중앙 집중 법원이 발명가에게 공동체차원의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며, 공동체특

30) 홍성화, 정영진, 전계서, 2000,

31) Beath, John, op.cit., p.134.

32) EU, Report Update: EU, 2004, p.67.

허의 출원이 장려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심법원(일심법원 및 항소법원)제도는 고도의 전문판사로 구성되며, 2년 이내에 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동 사법제도는 EPO의 이의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sup>33)</sup>

회원국의 포기가 없는 한 청구항을 모든 EU회원국의 언어로 번역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에 관한 타협은 제안의 유용성의 관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바, 이는 절약이 가능한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타협은 이탈리아와 아일랜드가 의장국일 때 정치적인 타협을 규정 채택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다. 결국, 언어문제가 정치적 타협을 무용화시킨 것으로, 청구항의 번역에 부여되는 법적 성격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의 특허는 등록된 개별 국가에서 유효하다. 이는 국가 출원절차 또는 EPO 출원절차를 토대로 부여되는 것이다. 특허 소송은 개별 국가에 따라 유럽에 걸쳐 다양하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소송이 분리된 반면, 그 밖의 국가에서는 함께 심리되며, 처리속도 또한 다양하다. 현재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두 개의 독립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기존 체제의 수정인 유럽특허가 부여되는 EPC의 개혁이다. 둘째는 공동체특허제도의 창설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EPC의 수정제안은 EPO가 EU의 기관이 아니므로 EU의 시도는 아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공동체특허와 연계되어 있다. 최초의 시도는 프랑스가 주관한 EPO국가간회의에서 발의되었고, 이는 유럽특허획득 비용을 경감하고 EPO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1999년 6월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그 임무는 소위 집행체계 즉 조정(arbitration), 공동체(common entity) 창출 및 선택절차(optional protocol) 등 3개의 가능한 대안의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었다.<sup>34)</sup>

공동체는 국가법원은 법률문제에 대한 판결을 하는 중앙 공동체(후에 권한자문위원회: Facultative Advisory Council로 개명)에 법률문제를 문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문의는 선택적이며,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상 그런 체계는 EPC 규정의 해석을 표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실제로는 매력을 갖지 못한다. 그럼에도 선택적 절차에 의해 2심 법원은 공동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선택적 절차는 EPC에 대한 선택적 절차를 만드는 것이다. 국가들은 이 선택적 절차에 서명을 하고, 특허문제에 관한 그들의 재판권을 유럽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단일의 유럽특허법원에 양도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유럽특허소송의 정서<sup>35)</sup>로 2001년 2월에 제안된 내용에는 유럽

33) ibid, pp.67-68.

34) 홍성화, 정영진, 전개서, p.12.

35) EPLP: 유럽특허소송협정(EPLA) 으로도 알려져 있음.

특허법원(EPJ: European Patent Judiciary)은 지역부를 갖는 중앙부로 구성되며, 이들 지역부는 유럽특허법원의 일심법원으로서의 국가법원이 될 수 없다. 2심 유럽특허법원은 공동체인 권한자문위원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침해 및 무효문제도 함께 다룬다. 패소자는 송소자의 법적 비용, 법원 및 전문가 수수료와 관련된 합리적인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2심 사건은 새로운 사실, 증거를 가지고 일심결정에 불복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sup>36)</sup>

동 제안은 EPLA에의 참여를 촉진키 위해 어느 정도의 정치적 타협의 성격도 갖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복잡성을 대체하기 위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동 회의에 이어 2004년의 외교회의까지 27만 유로의 재정지원이 향후 작업을 위해 배정되었다. 그러나 공동체특허를 도입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의 영향으로 재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수의 국가들은 EPLA와 공동체특허체제가 공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공동체특허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EPLA계획은 입장이 보다 분명해 질 때까지 잠시 동결되었다. 그러나 공동체특허에 관한 정치적 합의가 규정채택으로 연결되는데 실패하여 사실상 포기되면, EPLA의 전망은 보다 밝아질 것이다.

소프트웨어로 수행되는 3만 여건의 특허가 유럽에서 등록되었음에도 유럽의 여러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자신들의 발명이 특허가 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 혼동은 부분적으로는 기존 체계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sup>37)</sup>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EU전체에 걸친 소프트웨어로 수행되는 발명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는 컴퓨터로 수행되는 발명의 특허에 관한 지침을 제안했다.<sup>38)</sup>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EU에서 컴퓨터로 수행되는 발명의 특허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유럽 특허청의 최근 관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르면 특허의 표준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및 기술적 특성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그러한 발명은 다른 분야의 기술과 같이 특허될 수 있다.<sup>39)</sup>

2003년 9월에 EU의회는 제1차 회의에서 입장문을 채택하였다. 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수정을 하였다.<sup>40)</sup>

36) 상계서, p.14.

37) EPC 제52조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있다.

38) EIU, Viewswire, 2004, p.54.

39) 집행위원회의 제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a) 제안된 지침에서 컴퓨터수행 발명의 특허요건인 기술적 기의 정의.
- b) 타 기술분야에서 발명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컴퓨터수행발명의 특허를 허용하도록 하는 회원국의 의무.
- c) 컴퓨터수행발명에서 허용되는 청구항의 정의
- d)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저작권에 관한 EU지침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되는 행위를 보장하는 규정(예, 역 공정 및 재편집 등)

의회의 투표에 이어 각료이사회는 공동입장을 채택하였다. 동 지침은 2004년 5월의 경쟁력 이사회와의 안건이 되었다. 아일랜드 의장국의 타협안이 몇몇 회원국이 몇 개의 문제에 있어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었다. 아일랜드의 타협안은 업계를 만족시키고 있는데, 그 것은 EPO의 판례와 관행을 반영하고 있다.

#### IV. 한·EU FTA의 지적재산권<sup>41)</sup> 보호와 특징

EU는 오랜 역사적 전통에 따른 문화적, 학문적 자산과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온 다양하고 강력한 경제, 산업적 기반 및 그와 관련된 많은 지적재산을 축적해 오고 있다. 한편, 각국이 지적재산이 단순한 보유자산의 의미를 넘어 보다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통해 구체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노력도 강해지고 있는데, EU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EU는 유럽이외의 지역에 있어서 EU의 지적재산권이 보다 강력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EU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다른 측면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EU FTA 제10.5조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부여되는 보호를 양 당사자가 준수하기로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 40) a) 소프트웨어가 특허로 보호되는 범위: 의회는 컴퓨터로 수행되는 발명의 청구항을 제한하였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만에 대한 특허청구항의 보호를 요청할 수 없고, CD와 같은 수단을 수반해야 한다고 분명히 하였다. 물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는 소위 프로그램된 장치(apparatus)인 경우에만 보호가 가능하다. 이는 기업들이 특허된 프로그램을 포함한 CD의 판매와 특허된 발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특허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EPO나 미국의 관행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이 없다.
- b) 중요목적을 위한 예외: 의회는 호환성을 위한 중요 목적을 위한 특허된 기술의 이용은 특허보호로부터 예외로 하고 있다. 이는 EPO의 현행관행과 미국의 경우보다 훨씬 넓은 특허 보호의 예외가 되는 것이다.
- c) 특허보호의 이용성 조건: 최근에 EPO는 기술적 기여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컴퓨터수행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비록 EPO의 판례가 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는 않고 있지만 기술적 기여의 요건은 미국의 그 것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해 온 것이다. 이러한 보다 엄격한 적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EPO의 관행은 소프트웨어관련 발명의 대부분에 특허를 부여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컴퓨터수행발명이 기술적 기여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한 유럽의회 수정안은 많은 미국의 특허가 유럽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허가 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원인과 결과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고 물품을 자동화되게 생산해야 한다.
- d) 데이터처리 예외: EU의회는 정보의 생산, 취급, 처리, 배포 및 출판을 위한 어떤 행위도 특허의 침해로부터 제외하고 있다. 이 규정은 컴퓨터기술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특허보호에서 선례가 없는 예외를 만들고 있다. 동규정은 어떤 종류의 특허도 정보의 처리를 위한 행위와 관련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 41) 지적재산권 분야는 3개의 절(Section)로 되어 있다. 제1절은 일반규정이고, 제2절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준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및 그 밖의 규정 등으로 구성되고, 제3절은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다루고 있다.

- (a)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1961)(이하 로마조약 “Rome Convention”) 제1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 (b) 문학,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이하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 (c) 세계지적재산기구(이하 세계지적재산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저작권조약(1996)(세계지적재산권기 저작권조약)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 (d)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1996)(이하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 “WPPT: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제1조부터 제23조까지의 조항.

이 규정을 통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은 기존의 50년을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방송사업자에게는 TV 방송물은 상영하는 댓가로 입장료를 받는 행위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였고<sup>42)</sup> 권리자 추정 규정을 방송사업자에게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43)</sup> 즉,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민사절차에서 각 당사자는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자연인이나 실체가 그러한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지정된 권리자라는 추정을 규정하도록 추가한 것이다.

재판매권(Artists' Resale Rights)은 한·EU FTA 협상 시작 때부터 EU가 요구해온 것으로서 미술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저작자(작가) 또는 상속권자가 판매액 중 일정한 몫(로열티)을 받을 수 있는 권리<sup>44)</sup>로 EU국가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나 한국 저작권법에는 없는 제도이다. 미술작품에 재판매권이 도입된 것은 작품이 판매되거나 연주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저작권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저작자 또는 작곡가 등 다른 저작권자와 달리 미술작품은 그 가치가 복제물이 아닌 원본에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매매 하면 추가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미술 저작자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sup>45)</sup> 1920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기초예술이 발달한 유럽을 중심으로 40여개 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1948년 베른협약<sup>46)</sup>에서도 채택되었으나, 각국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한국이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하여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재판매권 도입의 적

42) 한·EU FTA 제10.9조 제5항.

43) 한·EU FTA 제10.53조 제5항.

44) 재판매권 보호지침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재판매권의 보호기간도 예술품의 보호기간과 같이 저작자 사후 70년이다.

45) 매일경제, 2011.7.19., A39면.

46) 재판매권은 문학 및 예술작품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의 선택적 보호 사항에 해당된다.

절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해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 하였다.<sup>47)</sup>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통제조치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접근통제와 저작물의 복제, 전송, 배포 등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이용통제 등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컴퓨터 인터넷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아이디(ID) 및 패스워드>Password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저작물에 접근과 이용에 대한 보호조치이다.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sup>48)</sup>를 위해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장치, 상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를 위한 광고를 하거나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소지하거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로 하였다.<sup>49)</sup>

- (a)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매 되는 것.
- (b)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 (c)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화 하는 것.

상기의 내용은 한국의 관련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로마협약, 베른협약, 저작권조약, 실연 및 음반조약에 가입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또한 제10.6조 저작자 권리의 존속기간이나 제10.7조 제1항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2항 텔레비전 신호 재송신 문제 등은 협정발효 후 2년간의 경과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준비가 미비한 부문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한국이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OHIM은 전술한바와 같이 공동체상표 등록을 총괄한다. 따라서 개별회원국에 등록된 상표는 다루어지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한·EU FTA 상표 의무의 이행주체는 EU공동체상표로 한정된다. 즉, EU의 공동체상에 등록되는 상표(디자인도 포함됨)에 대해서만 한·EU FTA상의 의무를 부담하며 개별회원국에 등록되는 상표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표의 등록절차에 대해서 한국과 EU는 상표 등록의 거절이유가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

47) 한·EU FTA 제10.10조.

48) 이 협정의 목적상, 기술조치라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관하여, 각 당사자의 법령에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권리자가 혀락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기술조치는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이 보호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암호화, 스크램블이나 그 밖의 변형과 같은 접근 통제나 보호절차, 또는 복제통제 메커니즘의 적용을 통하여 권리자에 의하여 통제되는 경우에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49) 한·EU FTA 제10.12조 제25항.

지되고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그 출원인이 그러한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적인 등록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한국과 EU는 또한 이해 당사자가 상표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한다. 한국과 EU는 상표출원 및 상표 등록에 관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sup>50)</sup>

또한 한·EU FTA 제10.16조에서는 한국과 EU가 상표법조약(1994)을 준수하고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2006)을 준수하기로 하여 행정위주에서 출원인 중심의 상표제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조약은 지난 1994년에 체결된 상표법 조약을 바탕으로 국제적 논의를 거쳐 채택된 제도로 현대적 의미의 국제표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싱가포르 조약은 상표법조약 이후 급속하게 발전해온 정보통신기술 및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시스템을 자세하게 규정해서 이 분야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하나의 언어(영어)로 출원이 가능하고 특히 상표출원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로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 있어 새로운 유형의 많은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EU FTA에서 지리적 표시<sup>51)</sup>란, EU의 원산지 표시 착향포도주, 주류,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와 한국의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주세법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sup>52)</sup> 이는 한·EU FTA 지리적 표시 분야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 대상을 농산물과 식품, 포도주, 착향포도주, 중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까지 포함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리적 표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행정관리 체계도 도입하였다. 지리적 표시의 절대적 보호대상은 부속서에 열거된 농식품<sup>53)</sup>에까지 확대 되었다.<sup>54)</sup>

<표 4-1>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보호대상 지리적 표시 범위가 EU의 보호대상 범위보다 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한국이 지리적 표시 보호에 소극적이었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sup>55)</sup>

50) 한·EU FTA 제10.15조.

51) 한·EU FTA 제3관 각주: 가. 2006.3.20. 이사회규정(EC) 제510/2006호, 2008.1.15.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10/2008호, 1991.6.10. 이사회규정(EEC) 제1601/1991호, 1999.15.17. 이사회규정(EC) 제1493/1999호, 2007.10.22. 이사회규정(EC) 제1234/2007호 또는 이러한 규정을 대체하는 규정에 언급된 지리적 표시, 원산지 명칭,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포도주 및 지리적 표시를 가지는 테이블 포도주 그리고 한국의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759호, 2009.6.9.) 및 주세법(법률 제8852호, 2008.2.29.)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리적 표시.

52) 윤여강, 정태호 전개서 p.14.

53) Annex 10-A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제1부 EU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및 식품, 제2부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및 식품.

54) 상계서, p.14.

또한 협정 제10.26호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개별출원 규정에서 한국과 EU의 관련법에 따라서 지리적 표시의 인정 또는 보호를 구할 권리를 저해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당사국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개별 출원에 대해 보호를 구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EU는 한국의 관련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리적 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표 4-1〉 양측의 지리적 표시 보호수자

|    | 농식품 | 포도주 | 증류주 | 합계  |
|----|-----|-----|-----|-----|
| 한국 | 63  | 0   | 1   | 64  |
| EU | 60  | 80  | 22  | 162 |

자료 : 외교통상부

양측의 주요 지리적 표시

한국: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진도홍주, 고창복분자 등

EU: 보르도, 부르고뉴, 샴페인, 꼬냑, 스카치위스키, 까망베르드노르망디(치즈) 등

한국도 EU에서의 한국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여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보유한 지리적 표시의 수가 EU가 보유한 지리적 표시 수보다 적어서, 지리적 표시 보호 확장만 놓고 보면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불리한 입장이다.<sup>56)</sup>

그러나 한·EU FTA 제10.25조에서는 양측이 지리적 표시에 관한 협력 및 대화를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여 지리적 표시의 추가 및 삭제와 지리적 표시에 관한 입법 및 정책 등을 수행하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향후 조정이 가능하게 하였다.<sup>57)</sup>

- (a) 적용 가능한 경우 제18조 제3항 및 제10.18조 제4항에 언급된 관련절차를 마친 후에 지리적 표시를 구성하는 것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보호될 한국과 EU의 개별 지리적 표시를 추가하기 위해 부속서(Annex 10-A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Annex 10-B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Aromatised Wines and Spirits)를 수정하는 것.
- (b) 원산지 당사자<sup>58)</sup>에 의해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더 이상 다른 쪽

55) 상계서, p.15.

56) 상계서, p.20.

57) 한·EU FTA 제10.25조 제3항.

58) 협정 각주인용,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중단하는 경정은 그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로 하는 당사자의 전속 책임이다.

당사자에게 지리적 표시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개별 지리적 표시를 삭제하기 위해 (a)에 언급된 부속서를 수정<sup>59)</sup> 하는 것.

(c) 이 협정상의 법령에 대한 언급은 이 협정의 발효 후 특정일에 개정되고 대체되어 효력이 있는 그 법령에 대한 언급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한·EU FTA 제10.27조에서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독립적으로 창작되고 새롭고 독창적이거나 독특한 특징을 가진 디자인에 대해 보호하는 것이다.

등록디자인의 경우, 한국은 디자인 등록을 위한 출원이 제출되기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거나 공개적으로 실시된 경우, 디자인이 새롭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고, 또한 디자인이 등록을 위한 출원이 제출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알려지거나 공개적으로 실시된 디자인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창작될 수 있었던 경우에도 디자인이 독창적이지 않은 것으로 하기로 하였고, EU는 등록 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또는 미등록 디자인의 공개일 이전에 동일한 디자인이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 디자인이 새롭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디자인이 정보가 있는 사용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된 디자인이 그러한 사용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과 다르지 않은 경우 디자인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미등록외관(Unregistered Appearance)에 부여되는 보호는 미등록 외관을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을 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sup>60)</sup>

한국과 EU는 미등록외관(미등록디자인과 유사)에 대해서 한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하고 있고, EU는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이사회 규칙에 의해 보호하고 있는바, 등록디자인 및 미등록외관에 대해서 각자의 협약 수준으로 보호를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호기간으로 각각 15년<sup>61)</sup> 3년<sup>62)</sup> 으로 하였다.

디자인 부문 또한 새로운 유형의 많은 디자인을 등록해야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특허청이 주축이 되어 2012년 디자인 국제등록에 관한 해이그협정(Hague Agreement) 가입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59) 협정 각주인용, 이는 명칭 및 제품 범주를 포함하여 지리적 표시 그 자체의 수정을 말한다. 제10.18조 제3항 및 제10.18조 제4항에 언급된 명세서의 수정 또는 제10.18조 제6항 (d)에 언급된 책임 있는 통제기구의 수정은 그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로 하는 당사자의 전속 책임이다. 그러한 수정은 정보목적으로 전달 될 수 있다.

60) 한·EU FTA 제10.29조.

61) 한·EU FTA 제10.30조 제1항.

62) 한·EU FTA 제10.30조 제2항.

와 논의해 헤이그 시스템 가동을 위해서 디자인 보호법등 관련법 개정작업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한·EU FTA 10.33조에서 특허에 관해서는 양 당사자가 특허법조약(2000)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수하기로 하였다. 특허 부문에서 기타의 특징은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특허보호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의 존속기간연장<sup>63)</sup> 의약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제출되는 자료의 보호<sup>64)</sup>, 식물보호제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제출되는 자료의 보호<sup>65)</sup> 등이다. 내용은 첫째, 의약품의 최초 판매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단축된 특허기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둘째, 신약의 판매허가를 얻기 위해 최초로 제출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로서 TRIPs 협정 제39조를 충족시키는 자료의 경우 최초 판매허가일로부터 5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것. 셋째, 식물보호제품의 판매허가를 얻기 위해 최초로 제출된 자료의 경우 최초 판매허가일로부터 최소 1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한·미 FTA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조건들이어서 협정내용상의 불리함은 없어 보인다.

## V. 결 론

EU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은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들의 강한 의지에 따라 정책적 우선순위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순환 의장국의 우선추진 정책계획에서도 빠짐없이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항상 포함되고 있는 점과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 없이는 EU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집행위원회에서 발표되는 여러 자료들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등의 지적재산권을 EU 이외의 시장에서도 효과적으로 보호 받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한·EU FTA에 나타난 지적재산권 분야를 보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한국의 관련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 저작자 권리의 존속기간, 방송사업자의 권리, 텔레비전 신호 재송

63) 한·EU FTA 제10.35조.

64) 한·EU FTA 제10.36조.

65) 한·EU FTA 제10.37조.

신 문제 등에 있어서 2년간의 경과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준비가 미비한 부문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만 협상 시작 때부터 EU가 요구해 왔던 재판매권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대립을 보이고 있어서 도입의 타당성과 실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상표의 경우, 싱가포르조약을 준수하기로 하여 상표출원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로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 새로운 유형의 많은 상표를 등록해야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는 한국이 보유한 지리적 표시의 수가 EU가 보유한 지리적 표시 수 보다 적어서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불리한 입장이다. 그러나 작업반을 구성하여 향후 지리적 표시의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하도록 합의함으로써 불리함을 보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디자인은 특허청이 주축이 되어 2012년 디자인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가입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 중이고, WIPO와 논의해 헤이그 시스템 가동을 위한 관련법 개정작업도 병행해나가고 있어서 상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유형의 많은 디자인을 등록해야하는 한국이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허부문에서 특허법조약 준수 외에 특허 권리의 존속기간 연장, 의약품 및 식물보호제품 시판허가 자료보호 등은 한·미 FTA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조건들이어서 내용상의 불리함은 없어 보인다.

전체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제외하면 한국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EU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EU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향후에도 많은 요구를 해 올 것이 분명하다. 특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등의 보호에 있어서는 한국과 치열하게 경쟁을 해 나가고 경쟁의 강도도 점차 높여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연구 과제를 정리하면, 이번 연구에서는 한·EU FTA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특징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 분석, 종합 해보았으며, 이에 따른 준비와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하여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매일경제, 2011.7.19.

민윤기, EU의 무역장벽, 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박성훈, EU의 대아시아 통상정책과 한-EU 통상관계, 통상법률 통권 제16호, 1997.

윤여강, 정태호, 한국·EU FTA 타결에 따른 한국지리적표시 보호에 대한 평가, 국제통상연구, 제15권 제1호, 2010.

윤미경, 지적재산권,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2001.

이기수, 지적재산권법, 지적소유권센터, 2001.

외교통상부, TRIPs 지리적 표시 특별보호 대상 확대논의: 지리적 표시 보호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2002.

\_\_\_\_\_, EU 정책브리핑, 2004, 2007, 2010. 각편.

한국수출입은행, EU의 지적재산권제도, 특별조사자료, 2004.

한국외교협회, Foreign Relations: EU, 2004.

홍성화, 정영진, WTO체제하에서 EU의 지적재산권보호, 2000.

Beath, John, "Innov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Uruguay Round", EU, 2003.

Benko, Robert P.,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sues and Controversies,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2001., p.46.

Chin, J.C. and Grossman, G.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Jones, R.W. and Krueger, A.O.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Trade: Essays in Honor of Baldwin, Robert E.*,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2000.

Chisum, D.S., Jacobs, A.,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IB, 1998.

Deardoff, Alan V., "Should Patent Protection Be Extended to All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Economy* 13., 1990.

Diwan, I. and Rodrik, D., "Patents, Appropriate Technology and North-South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0., 1997.

EIU, Viewswire, 2004.

\_\_\_\_\_, Report Update: EU, 2004.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ransition Report: EU, 2000.

European Central Bank, The Euro-system and the EU-Enlargement, 2000.

- ESCAP, Interregional Cooperation in Trade and Investment, New York: EU, 2004.
- Helpman, E., "A Simpl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with Multinational Corpor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2., 1994.
- \_\_\_\_\_, "Innovation, Imit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BER, WP. #4081, 1992.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9.
- Nordhaus, W.D., Invention, Growth and Welfare: *A Theoretical Treatment of Technical Change*, Cambridge, MA: MIT Press., 2003.
- Taylor, Scott M., "TRIPs, Trade and Growth", Discussion Paper No 93-03,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93.
- UBS, World Economic Outlook, 2010.5.
- [www.fta.go.kr](http://www.fta.go.kr) 2011.7.7, 방문.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 ABSTRACT

# A Stud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Features of Korea · EU FTA

Chang-Mo Kim\*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the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has been effective, as of 1 Jul 2011. EU enlarged its members up to 27 countries including Romania and Bulgaria in 2007, and stood up as the second largest trading partner to the Korea right after the China.

FTA, generally, shows the several different figures according to the countries concerned on the agreement. The EU has long history and cultural, educational assets. In addition to that, the EU also has economical, industrial bases. Therefore, the EU seeks fruitful profits utilizing 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 are copyrights and related rights, trade marks, geographical indications, designs, and patents, etc. on the Chapter 10.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Korea · EU FTA. Among them, the others except geographical indications seem to be somewhat the terms advantageous to the Korea.

It is possible to ask further requirements to the Korea in the years to come because the EU member countries are very much interested in the practical profi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us, it would be essential tasks for us to review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features of the Korea · EU FTA.

**Key Words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Features, Korea · EU FTA.

---

\* Professor, Kyonggi University